서울특별시 제2기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대표자 선정결과 공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-2281호(2018.10.15.) 관련하여, 서울특별시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대표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18년 12월 5일 서 **울 특 별 시 장**

- 1. 대표자 선정자 명단 : 별지 참조
- 2. 선정자 결격사유
 - ※ 결격사유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음
 - 1)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(破産宣告)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- 2)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- 3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- 4)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 선정자 제출 서류

- 가. 결격사유 확인서 1부 (붙임1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PDF, 이미지 파일로 제출)
 - 나. 신분증 사본 1부 (거주지 및 본인 확인용)
 - 다. 제출기한 : 12월10일(월)까지
 - 라. 이메일 (quynhhhoa@seoul.go.kr)으로 제출

4. 기타

- 가.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관련 일정관련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개인별 안내
- 나. 제2기 대표자는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.

서울특별시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대표자 선정자

○ 연임위원 : 총12명

연 번	국 적 (출신국)	성 명	연 번	국 적 (출신국)	성 명
1	러시아	오*에	7	일본	다* **리
2	러시아	포** ***리나	8	일본	야마** **꼬
3	미얀마	김***첼	9	중국	안*화
4	몽골	푸렙** ***야르	10	중국	하*도
5	베트남	원*금	11	키르기즈스탄	투라** **야나
6	스위스	타** *리	12	파키스탄	사** **인

※ 예비 합격자

연 번	국 적 (출신국)	성	명	연 번	국 적 (출신국)	성 명
예비 합격자1	중국	양*자		예비 합격자2	방글라데시	시** ***커

○ 신규위원 : 총 33명

연 번	국 적 (출신국)	성 명	연 번	국 적 (출신국)	성 명
1	네팔	쉬** **르	17	아제르바이잔	니*트
2	뉴질랜드	나*준	18	우즈베키스탄	사하****이자
3	대만	왕*리	19	이란	파** *리
4	대만	장*승	20	이집트	헤* **메드
5	독일	윤*나	21	인도	선** **르
6	러시아	김**산더	22	인도네시아	안* **마
7	말레이시아	콩*탱	23	일본	미*** *사요
8	모로코	슈***함	24	중국	용*란
9	몽골	우***마	25	중국	이*화
10	몽골	0;*0;	26	중국	0 *0
11	방글라데시	양*민	27	중국	임*옥
12	방글라데시	자*돌	28	중국	정*
13	베트남	안*희	29	카자흐스탄	디*라
14	베트남	현*	30	키르기즈스탄	H+*이
15	베트남	원*진	31	키르기즈스탄	슐레** *나
16	볼리비아	난*** **르가	32	터키	도* **르
※이상 국적(출신국) 가나다 순			33	프랑스	아이** **로카

○ 예비 합격자

연 번	국 적 (출신국)	성 명	연 번	국 적 (출신국)	성 명
예비 합격자1	우즈베키스탄	무*요	예비 합격자5	인도네시아	김*현
예비 합격자2	파키스탄	무*** *킵	예비 합격자6	네팔	이*정
예비 합격자3	공	조** **마	예비 합격자7	공	벗*갈
예비 합격자4	중국	동*루	예비 합격자8	대만	매*생

〈붙임 1〉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서

국적 (귀화자는 전국적)	성명	
연락처	생년월일	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대표자는 한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지 1년 이상 이며, 서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(공고일 전일 기준)하고 있는 만18 세 이상의 외국인주민으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1)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(破産宣告)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2)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될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사람
- 3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4)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각 호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틀림없이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(날인)합니다.

2018년 12월 일

대표자 : (인)

서울특별시장 귀하

첨부 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